

# 2020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객관식 답안지

※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

성명		생년월일 (YYMMDD)	필적감정용 기재란 * 아래 예시문을 옮겨 적으시오 본인은 좌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함	시험총 책임관	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시험 제1회
응시번호					MC 면제 응시 권명감정 시험장 서명

제1과목				
기록 관리 학개론				
1번	① ② ③ ④	11번	① ② ③ ④	21번
2번	① ② ③ ④	12번	① ② ③ ④	22번
3번	① ② ③ ④	13번	① ② ③ ④	23번
4번	① ② ③ ④	14번	① ② ③ ④	24번
5번	① ② ③ ④	15번	① ② ③ ④	25번
6번	① ② ③ ④	16번	① ② ③ ④	
7번	① ② ③ ④	17번	① ② ③ ④	
8번	① ② ③ ④	18번	① ② ③ ④	
9번	① ② ③ ④	19번	① ② ③ ④	
10번	① ② ③ ④	20번	① ② ③ ④	

견  
보

제2과목				
전자 기록 관리론				
1번	① ② ③ ④	11번	① ② ③ ④	21번
2번	① ② ③ ④	12번	① ② ③ ④	22번
3번	① ② ③ ④	13번	① ② ③ ④	23번
4번	① ② ③ ④	14번	① ② ③ ④	24번
5번	① ② ③ ④	15번	① ② ③ ④	25번
6번	① ② ③ ④	16번	① ② ③ ④	
7번	① ② ③ ④	17번	① ② ③ ④	
8번	① ② ③ ④	18번	① ② ③ ④	
9번	① ② ③ ④	19번	① ② ③ ④	
10번	① ② ③ ④	20번	① ② ③ ④	

## 응시자 준수사항

### □ 답안지 작성요령

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“**컴퓨터용 흑색 사인펜**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, 보기와 같이 올바르게 표기하여야 합니다.  
**<보기>** 올바른 표기 : ●      잘못된 표기 : Ⓛ Ⓜ Ⓝ Ⓞ Ⓟ Ⓠ
2. 답안지를 받으면 먼저 상단에 **본인의 성명, 응시번호, 생년월일**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  -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상단의 기재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, 작성된 답안지는 **1인 1매만 유효**합니다.(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 됨)
  - **필적감정용 기재란** :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빙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.
3. **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지 누락 여부, 인쇄상태 및 파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4. 답안은 매 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“**✓**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단자를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.
  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.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 - 다만,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
### □ 부정행위 등 금지

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1. 시험 시작 전에는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.
2.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**통신장비**(휴대폰, 태블릿PC, 스마트시계, 이어폰 등) 및 **전산기기**(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를 **소지할 수 없습니다**.
3. 시험 종료 후에는 **답안지 작성은 일절 할 수 없으며,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해서는 안 됩니다.**
  - 답안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 사항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마쳐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 후 **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5. 그 밖의 공고문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